

1. 개정이유

미래의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업무에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우선 활용하도록 의무화하고,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활용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와 신·재생에너지 보급·확대 지원을 위한 지역별 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 제공 근거를 마련하며,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「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20850호, 2025. 3. 25. 공포, 2025. 9. 26. 시행)됨에 따라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와 양성기관 지정서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·단체가 지정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첨부 자료를 명확히 함(안 제8조)
- 나.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증 발급 절차 및 관리 등과 관련하여 인용하고 있는 상위 법률의 조문 정비(안 제9조)
- 다.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와 양성기관 지정서를 정함(안 제10조 신설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입법예고 전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협의 전

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나. 사업계획서(요약서를 포함한다)

제9조제1항 중 “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3항”을 “법 제23조제1항”으로, “자격 요건”을 “자격요건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영 제17조제3항”을 “법 제23조제6항”으로 한다.

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(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) ① 영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.

② 영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.

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7호서식 중 “제23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”을 “제23조제1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8호서식 중 “제23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”을 “제23조제1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기후변화감시에측전문기관 지정 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25일
------	-----	----------

신청인	기관·단체명	법인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)
	성명(대표자)	생년월일
수행사업 종류	☐ 연구·개발사업 ☐ 전문인력 양성사업	
사무실 소재지	(전화번호:)	
인력 현황		
업무 실적		

「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후변화감시에측전문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기상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「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2. 사업계획서(요약서를 포함합니다) 3. 해당 기관·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	수수료 없음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1. 법인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사업자등록증명(사업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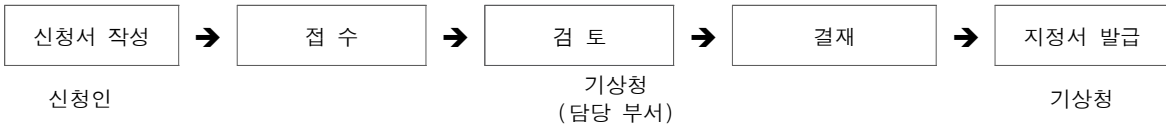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2호의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※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

기후변화감시에측전문기관 지정 신청서 (해양·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 분야)

※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25일
신청인	기관·단체명	법인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)
	성명(대표자)	생년월일
수행사업 종류	☐ 연구·개발사업 ☐ 전문인력 양성사업	
사무실 소재지	(전화번호:)	
인력 현황		
업무 실적		

「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후변화감시에측전문기관(해양·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 분야)의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해양수산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1. 「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조제1항제2호 및 별표 2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2. 사업계획서(요약서를 포함합니다) 3. 해당 기관·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	수수료 없음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1. 법인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사업자등록증명(사업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2호의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※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								
신청서 작성	➔	접 수	➔	검 토	➔	결재	➔	지정서 발급
신청인				해양수산부 (담당 부서)				해양수산부

제 호

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 지정서

1. 기관·단체명:
2. 대표자의 성명:
3. 사무실 소재지:
4. 수행사업의 종류:

☐ 연구·개발사업

☐ 전문인력 양성사업

「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기상청장 직인

제 호

기후변화감시에측전문기관 지정서 (해양·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 분야)

1. 기관·단체명:
2. 대표자의 성명:
3. 사무실 소재지:
4. 수행사업의 종류:

☐ 연구·개발사업

☐ 전문인력 양성사업

「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기후변화감시에측전문 기관(해양·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 분야)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해양수산부장관 직인

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 30일
신청인	기관명	대표자 성명	
	전자우편 주소	사업자(법인)등록번호	
소재지	(전화번호:)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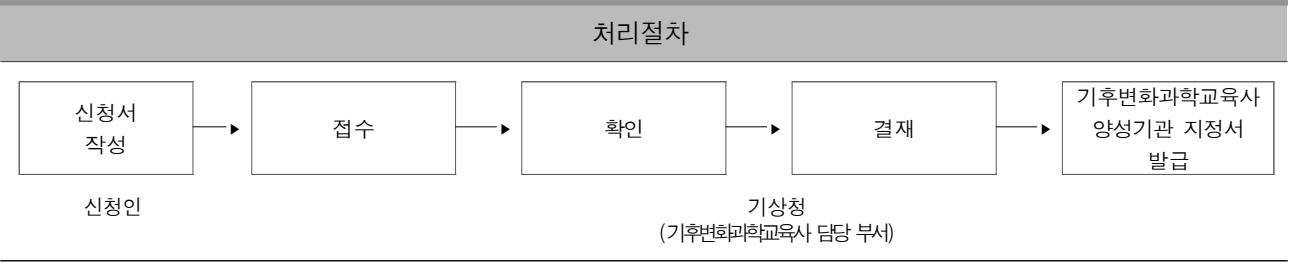
「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의3,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기상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교육과정을 포함한 교육계획 1부 2.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에 필요한 교수요원, 교육시설·장비 보유 현황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



제 호

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서

1. 기 관 명:
2. 대 표 자:
3. 사업자(법인)등록번호:
4. 소 재 지:
5. 지정기간: . . . ~ . . .

「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의3,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 기관을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기상청장 직인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8조(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 의 지정) ① 법 제17조제3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후변 화감시예측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기관·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을 신청 해야 한다.		제8조(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 의 지정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		
1. 기상청장으로부터 지정받으 려는 경우: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 신청서(전자문서를 포함 한다)에 다음 각 목의 서류(전 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 여 기상청장에게 제출 가. (생략) 나. <u>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연구·개발 사업계획서</u> 다. (생략)		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가. (현행과 같음) 나. <u>사업계획서(요약서를 포 함한다)</u> 다. (현행과 같음)		
2. (생략) ②·③ (생략)		2. (현행과 같음) ②·③ (현행과 같음)		
제9조(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 증의 발급) ① <u>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3항</u> 에 따라 기후 변화과학교육사 자격증을 발급		제9조(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 증의 발급) ① <u>법 제23조제1항</u> - ----- -----		

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
식의 발급 신청서(전자문서를
포함한다)에 영 제17조제1항 및
별표 4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
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(전자문
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기
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② (생 략)

③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후
변화과학교육사 자격증은 별지
제8호서식과 같다.

④ ~ ⑦ (생 략)

<신 설>

----- 자격요건 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법 제23조제6항-----

-----.

④ ~ ⑦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
기관의 지정 신청) ① 영 제17
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
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.

② 영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
지정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
다.